# '24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세명대학교 운영 기준

- 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  - 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
    - 사업 기본요건\*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장학사업 신청자
      - \*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 확인자
    - o 교내근로 선발시, 학기/방학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직전학기 근로자의 개념은 가장 최근의 근로참여자를 뜻함. ex) 학기 근로자 선발시 : 직전학기 근로자는 방학 중 근로자
    - o 근무업무별 부적합·과거 근태·근로불량자·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

□ 일반교내근로 : 학부(과) 실습실 및 행정부서

ㅇ 선발기준 : 순위순 선발

1순위	2순위	3순위		
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	
1순위(학자금지원구간	2순위(학자금지원구간	3순위(학자금지원구간		
4구간 이하)	5~6구간 이하)	7~9구간 이하)		

- 동순위의 경우 직전학기 미선발자 →우선선발사유자→ 근로시간 적합자순 → 성적 → 면접 순으로 선발
-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  - 차순위자 또는 추가선발(선발기준 동일)
  - 근로지 책임자(팀장 또는 부서장)의 추천을 받은 경우
  - 0 기타사항
  - 학부(과) 실습실의 경우 해당학부(과) 재학생 우선선발
  - 선발 순위가 높더라도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15시간(방학 중 35시간) 미만인 경우, 근로지와 근로기간(및 시간)이 맞지 않는 경우 선발 제외



## □ 교외근로

1. 일반교외근로

ㅇ 선발기준 : 순위순 선발

1순위	2순위	3순위		
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한국장학재단 선발순위		
1순위(학자금지원구간	2순위(학자금지원구간	3순위(학자금지원구간		
4구간 이하)	5~6구간 이하)	7~9구간 이하)		

- 동순위의 경우 직전학기 미선발자 →우선선발사유자→ 근로시간 적합자순 →성적 → 면접 순으로 선발
-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
  - 차순위자 또는 추가선발(선발기준 동일)
  - 근로지 책임자(팀장 또는 부서장)의 추천을 받은 경우
- 0 기타사항
  - 선발 순위가 높더라도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15시간(방학 중 35시간) 미만인 경우, 근로지와 근로기간(및 시간)이 맞지 않는 경우 선발 제외

#### 2. 방학 중 집중근로

- o 선발기준 : 한국장학재단 1순위 기관매칭자 중 학자금지원구간 과 직전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
- ㅇ 선발 방법 : 학자금지원구간점수 + (직전학기 백분위점수/2)
- 0 학자금지원구간 배점기준

학자금지원구간	0~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	9~10구간
점수	50	45	40	35	30	25	20	15	10

- ㅇ 대체선발 : 차순위자 선발
- 0 기타사항
  - 근로 포기자 발생 시 근로지에서 대체학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선발 가능
  - 집중근로 기간 중 휴학예정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선발에서 제한
  - 1순위 매칭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방학 중 집중근로신청자 중에서 추가 선발 가능
  -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직전학기 근로자는 선발대상에서 우선제외

# 2.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

- □ 근로장학생 활동관리
  - ㅇ(사전교육)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
    - 학교단위(또는 근로지 단위)로 사전교육실시
    - 근로시작 전 사전교육이 방학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근로 이후에 시행
    - ※ 학교단위 사전교육 이후 추가·대체선발의 경우 근로지별로 사전교육을 실시
    - 근로지별 위치 및 특성이 상이함으로 안전교육은 근로지별로 시행
  - ㅇ (간담회) 학년도당 수시 간담회를 실시
    - 근로지 방문 간담회(1개 이상의 근로지) 또는 근로지별 무작위 인원 선발 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간담회
    - ※ 코로나-19바이러스 등, 재학생 안전상의 문제로 온라인교육으로 간담회 대체할 수 있음

#### □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

- ㅇ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,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※학적 변동 : 휴학, 자퇴, 졸업
  - 단,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, 재학(이수)학기까지 근로가능
- 이 (자격 해제 및 참여 제한)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학기 및 이후 학기에 대해 장학생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  -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거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 근로지 담당 자의 승인 없이 근로일정을 변경하는 경우
  -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
  - 상습적으로 출근부 작성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,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
  - 근로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  - 근로지 담당자 및 장학담당자에게 폭언, 욕설 등 언행이 바르지 않거나,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  -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  -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
  -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
  -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

#### □ 근로기관 자격 관리

- ㅇ (자격 관리) 대학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근로지를 선별
- ㅇ (자격 해제)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근로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

# 제한을 할 수 있음

-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
-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미흡한 경우
- 장학생의 대체, 대리 근로 등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
-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
- 장학생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
- 이외 대학과 재단이 판단하였을 때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

## □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- ㅇ 지급일정 : 실제 근무 해당 월의 익월 3 ~ 4째주 중 장학금 지급
- ※ 출근부 확인, 승인, 본교 장학금 지급일정 상 지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
- ㅇ 지급방법 : 본교 포털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